

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1년 2월 25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11년 2월 25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6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(2011. 3. 9)
상정 및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물재생과장 고영태)

□ 제안이유

- 「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를 개정하여 2011년 3월 고지분부터 하수배제방식별 부과체계를 조정하고 하수도 요금을 소폭 인상하고자 하였으나,
- 정부의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에 따라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방안에 부응하고 서민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수도사용료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조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시기를 “3월 고지분부터”에서 “7월 고지분부터”로 조정함(안 조례 제2584호 부칙)

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문	답 변
<p>○ 하수도 요금 인상시기 조정 취지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것이라면 인상시기를 3월에서 7월로 4개월간 늦추는 것 보다는 내년 1월로 조정하는 방안이 서민 가계 부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함.</p>	<p>○ 정부의 방침에 따라 부득이 인상시기를 4개월간 연장하려는 것이며, 내년 1월로 조정하는 것은 하수도 관련 시설의 개·보수 비용 확보와 하수도특별회계 부실 방지 등 하수도 공기업 회계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.</p>
<p>○ 하수도 요금 인상 시기 연장과 관련하여 시민의 혼란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.</p>	<p>○ 하수도 요금 인상에 대해 오는 5월부터 시 홈페이지, 언론사, 전단지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음.</p>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 음

나. 반대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천시조례 제2584호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중 “2011년 3월”을 “2011년 7월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